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일자 : 2005. 1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조정

나.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하수도법 제38조

제38조(강제징수)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·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중 후단을 삭제한다.

제18조제1항중 "100분의3"를 "100분의5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금액이 30만원"을 "금액이 1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하수배출량의 인정)①(생략) ②(생략) 1-2(생략) 3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. 단, 신고량은 3년마다 재조사하여야 한다	제11조(하수배출량의 인정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-2(현행과 같음) 3.----- ----- ----- . (후단삭제)
제18조(가산금)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 할 수 없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18조(가산금)①----- ----- ----- ----- 100분의5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②----- 금액이 10만원 ----- ----- .